

## 교직원 창업 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교직원의 창업을 지원하며, 창업기업의 관리 및 교직원 창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창업'이라 함은 본교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 및 직원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성과를 활용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과 기업 경영 및 그 예비활동을 말한다.
- ② '창업'은 교직원이 대학의 시설, 장비, 연구인력 등을 사용하는 교내 창업, 교내 창업 이외 형태의 일반 창업 및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제3자의 창업기업에 등기이사로 참여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제3조 (기본원칙)** 교직원 창업자는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적 기여를 하여야 한다.

### 제 2 장 창업 및 지원관리

**제4조 (주관부서 및 승인절차)** ① 창업의 시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창업지원단에서 주관한다. 다만, 인사 관련 사항은 교직원 인사 담당부서의 협조를 얻어 시행한다.

- ② 창업을 원하는 교직원은 소속 학부(과)장 또는 부서장의 동의와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창업 신청을 한 교원의 강의평가점수가 직전 3년간 평균 3.75 이상이어야 한다.
- ④ 창업 신청을 한 직원의 직전 3년간 인사고과의 결과가 불량으로 판정되었거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 ⑤ 창업을 하였다가 승인 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제5조 (위원회)** 위원회는 창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업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창업자의 겸직, 창업휴직에 관한 사항
3. 창업기간의 조정·연장에 관한 사항

## 교직원 창업 규정(5-3-33)

4. 창업승인의 취소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학교에 대한 재정적 기여에 관한 사항
6. 교원의 책임시수 감면, 직원의 근무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
7. 기타 창업에 관한 사항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창업신청)** 창업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갖추어 창업지원단에 제출한다.

1. 교직원 창업(겸직) 승인 신청서 1부
2. 소속 학부(과)장 및 부서장 창업(겸직) 동의서 1부
3.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1부
  - 가. 창업 배경 및 회사 개요
  - 나. 창업자 이력 및 구성원 인적 사항
  - 다. 창업관련 기술 및 향후 개발 계획
  - 라. 사업성 및 기대효과, 학생 현장실습(인턴십) 연계 방안
  - 마. 소요자금 조달계획
  - 바. 대학에 대한 재정 기여계획(발전기금 기부 계획)
  - 사. 직무공백 보완 대책(수업 및 학생지도, 업무 수행 등)
4. 예비벤처기업 확인증 사본 1부
5. 대학 시설물 허가원(해당할 경우, 사용 기자재 목록 포함) 1부
6. 창업 협약서 2부

**제7조 (협약체결)** ① 창업지원단장은 제4조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창업이 승인된 경우, 그 결과를 창업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창업을 승인 받은 자는 승인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창업에 관한 협약을 총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1. 창업기간 및 창업 대상 기술
2. 창업 및 운영관련 대학 투입 분 요청내역(공간, 시설, 실험기기, 기술지원 등)
3. 대학 재정 기여 계획(주식배당, 주식매수선택권, 경상기술료, 기부금 등)
4. 기타 특별한 사항

③ 창업 승인을 받은 자의 사유로 협약 체결의 지연이 불가피할 경우 협약 체결 마감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창업지원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체결 지연은 협약체결 마감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창업자의 겸직)** ① 창업 협약을 체결한 교직원은 복무규정 제6조, 교원인사규정 제28조, 직원인사규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겸직이 승인된 것으로 한다.

### 교직원 창업 규정(5-3-33)

- ② 겸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 ③ 겸직 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교직원은 겸직기간 종료 예정일 90일 전까지 연장신청 사유서, 소속 학부(과)장 및 부서장 겸직 연장 의견서, 사업계획서, 기업회계자료를 창업지원단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겸직 기간 중에는 신분, 업적평가, 보수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9조 (창업자의 휴직)** ① 창업 협약을 체결한 교직원은 정관 제41조, 제42조, 복무규정 제30조, 교원인사규정 제30조, 직원인사규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창업으로 인한 휴직을 허용할 수 있다.

- ② 창업으로 인한 휴직 발령은 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창업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창업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휴직 기간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⑤ 창업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임용(채용)기간 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휴직 기간 종료일은 정년 예정일 이내여야 한다.
- ⑥ 창업으로 인한 휴직자는 휴직기간의 종료 즉시 복직하여야 한다.

**제10조 (기업 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① 창업자는 창업 협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창업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창업자는 창업 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절차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창업지원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변경 신고 및 보고)** ① 창업자가 창업 협약일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창업지원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2. 승인 받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 내용 변경
3. 법인 전환
4. 사업자등록증상의 변경
5. 폐업

- ② 창업자는 창업 협약일 이후 당해기업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를 포함한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 결산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창업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창업 지원)** 창업 승인을 받은 교원이나 직원이 경영상의 이유로 각기 책임시수의 감면 또는 근무시간의 단축을 창업지원단에 신청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

## 교직원 창업 규정(5-3-33)

인을 통해 허용할 수 있다.

**제13조 (창업승인 취소)** 창업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건의를 통해 총장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창업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승인 받은 사업과 현저히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3. 창업성과가 미미하고 창업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경우
4. 본 대학의 명예를 실추 시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5. 보고없이 폐업을 한 경우
6. 창업승인을 받은 교원의 강의평가점수가 창업승인 후 최근 6개 학기 평균 3.75 미만일 경우. 다만, 창업승인일이 포함된 학기부터 강의평가점수 산정 대상이 된다.
7. 창업승인을 받은 직원의 창업승인 후 최근 3년 이내 인사고과에서 불량으로 결과가 판정되거나 징계처분이 있을 경우
8. 기타 총장이 승인된 사항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4조 (이의신청 등)** ① 제13조에 따른 창업승인의 취소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구술로 이의제기를 한 후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한 심의결과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장과 이의제기를 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제기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이의제기를 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시설물 사용)** ① 창업자가 창업활동과 관련하여 대학 시설물의 사용을 요청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시설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에 관한 산정 및 징수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다만, 창업자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경우, 제반 비용 및 관련 절차는 창업보육센터규정에 따른다.

③ 대학의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④ 창업자 및 그 기업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대학의 시설물에 인적, 물

## 교직원 창업 규정(5-3-33)

---

적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대학은 창업자에게 대학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지식재산권)** 창업자는 창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권을 창업지원단 및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기타 세부사항)**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